

제302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태성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태 성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송파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성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

‘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
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현재 서울특별시는 도매시장법인, 중도매인, 시장도매인 등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에 대한 허가 및
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
정하고 있습니다.

또,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지
않는 일부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점이
발견되었습니다.

이에 본의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

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에 대한 허가 및
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,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
일부 조례를 정비하는 안을 담아 본 조례안을
대표 발의하였습니다.

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,
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
본래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
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
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